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03.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읍면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개별법령의 변경·폐지 및 본청으로의 업무이관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신설 : 8개업무

○ 근거법령 개정 : 3개업무

- 개인묘지 설치신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지도·감독,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관련법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이관된 사무 : 5개업무

- 광고물 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이륜자동차 위반행위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나. 위임사무 삭제 : 14개업무

○ 근거법령 폐지 : 3개업무

-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공연신고, 종묘상 등록

○ 본청으로 업무이관 : 10개업무

-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 폐기물처리장 일반 폐기물처리장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산림내 취사신고 불이행 및 산지정화보호구역 내의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상수도사용료의 감면, 상수도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 관급자재수불 및 보관, 급수 중지 및 폐전

- 규칙으로 제정할 사무 : 1개업무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다.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 : 4개업무

- 매· 화장신고, 개장신고(매장및요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 건축신고처리사무(건축법제7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17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95조)
- 대마재배허가(대마관리법 제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규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입 사 무 명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 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제77조 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제77조 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의수입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13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14	○ 매·화장 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5	○ 개장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6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17	○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7조
18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19	○ 입산허가	○ 산림법 제98조
20	○ 산림내 취사신고필증 교부	○ 산림법 제100조2 제3항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1	○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	○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제34조 및 제46조 및 평창군상수도 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제5조
22	○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및 제46조
23	○ 급수공사 위탁시행사 관리 및 책임	○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및 제46조
24	○ 건축신고처리사무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 신고수리	○ 지방자치법 제95조
25	○ 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 농지법 제37조제2항
26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처리사무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27	○ 농지법 제56조제1항의 보고 및 검사	○ 농지법 제56조
28	○ 대마재배허가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관 제 법 령 발 취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2001.1.18 조례 제1663호)

제3조(관리운영) ①시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 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위탁 징수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제1항 각호의 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징수의 위임) ①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 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제19조(권한위임) 군수는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와 제9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인장업법(1999.1.21 법률 제5648호)

인장업법은 인장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648호, 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법(2001.1.26 법률 제6385호)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자동차관리법(2002.8.26 법률 제6730호)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4.15>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999.4.15>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제8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지방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6호)

제6조 (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
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인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평창군재무회계규칙(2000.1.21 규칙 제890호)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 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개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개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조례(1995.3. 6 조례 제1452호)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1988.4. 6 법률 제4006호)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1988.4. 6 법률 제4006호)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제234조의22(공람및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연법(2002.1.26 법률 제6632호)

제4조 삭제 <2002.1.26>

제4조(공연신고)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2002.1.19 법률 제6615호)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시도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본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등)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항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제6158호 2000. 1. 12>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2000.1.11 조례 제1620호)

제2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군수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또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종자관리법(1995.12.6 법률 제5024호)

종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종자산업법) <제5024호,1995.12.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종묘업의 등록)②종묘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폐지 1995.12.6>

□ 종자산업법시행령(1997.12.31 법률 제15576호)

제49조 삭제 <1999.6.30>

제49조 (종자매매업의 신고 등) ①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신고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매매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종자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산림법(1980.1.4 법률 제3232호)

제98조(입산신고) 누구든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③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창군수도급수조례(2001.5.12 조례 제1675호)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평창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2001.5.12 규칙 제1675호)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 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 카드 비교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

□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케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개정 2001.11.22>)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 농지법(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3.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 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조사<개정 1999.3.31>)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1.12 법률 제6146호)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목적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채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부 칙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